[서식 (4)]

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.

※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(합계 30만원 이상)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.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1.12.06 - 2021.12.20
2. 대상자

순번	자동차 등록번호	소유주 명	주민(사업자)번호	금액(단위:원)	체납기간
	자동차의 종류	주	소		
1	36누5928	유*종	690209 - *******		. . ~ 2021.12.06
	승용차	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174번안길 31			
2	40오4967	김*란	541005 - *******		. . ~ 2021.12.06
	승용차	대전광역시 동구 광명길 7			
3	84부9680	박*주	590817 - *******		. . ~ 2021.12.06
	화물차	대전광역시 동구 미화4길 3			
4	84조0137	현*환	690523 - *******		. . ~ 2021.12.06
	화물차	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24			
5	대전80너5601	이*대	681127 - *******		. . ~ 2021.12.06
	화물차	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71번길 56			

2021년 12월 06일

대전동부경찰서장